

## 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### 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#### - KB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생략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마. 생략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좌동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마. 좌동</p> <p>(신설) 바. <u>KB 크레딧 알파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u></p>
	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KB 연금플랜 국내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, KB 마이플랜 장기 국공채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, KB스타 막강 단기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 및 KB스타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생략</p>	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KB 연금플랜 국내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, KB 마이플랜 장기 국공채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, KB스타 막강 단기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, KB스타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 및 <u>KB 크레딧 알파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u>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좌동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7.09%	수익률 변동성: <b>16.48%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#### - KB 연금 가치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생략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좌동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

	가. ~ 나. 생략	가. ~ 나. 좌동 (신설) <u>다. KB 크레딧 알파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 (채권)</u>
	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제2조 제9호 가 목의 채권형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~ 3. 생략	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제2조 제9호 가 목 <u>및 다</u> 목의 채권형 모투자 신탁에의 투자는 <u>합산하여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~ 3. 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6.87%	수익률 변동성: <b>16.49%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가치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생략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~ 다. 생략	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8. 좌동 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가. ~ 다. 좌동 (신설) <u>라. KB 크레딧 알파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 (채권)</u>
	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제2조 제9호 가 목 <u>및 다</u> 목의 채권형 모투자 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~ 3. 생략	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제2조 제9호 가 목, <u>다</u> 목 <u>및 라</u> 목의 채권형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<u>합산하여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~ 3. 좌동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12.90%	수익률 변동성: <b>15.39%</b>
	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밸류 포커스 3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생략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나. 생략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좌동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나. 좌동</p> <p>(신설) <u>다. KB 크레딧 알파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u></p>
	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KB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생략</p>	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KB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 <u>및</u> KB 크레딧 알파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<u>합산하여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좌동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</p>	

- KB 미국 S&P500 인덱스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생략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나. 생략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8. 좌동</p> <p>9. “모투자신탁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나. 좌동</p> <p>(신설) <u>다. KB 크레딧 알파 단기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</u></p>
	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제2조 제9호 가 목의 국내 채권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생략</p>	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제2조 제9호 가 목 <u>및</u> 다 목의 국내 채권형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<u>합산하여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~ 3. 좌동</p>
	<p><b>제39조(보수) ①~②</b> 생략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</p>	<p><b>제39조(보수) ①~②</b> 좌동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</p>

	<p>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아래 각 호의 신탁업자보수율 중에 연 1,000분의 0.1은 제2항 제9호 가 목의 신탁업자에게 배분한다.</p> <p>1. ~ 12. 생략</p>	<p>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아래 각 호의 신탁업자보수율 중에 연 1,000분의 0.1은 제2항 제9호 가 목 및 다 목에 따른 모투자신탁의 평균 투자비율에 따라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배분한다.</p> <p>1. ~ 12. 좌동</p>
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</p>		

2. 변경(예정)일: 2025년 04월 16일(수)